

Chubb 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 B 상품요약서

1. 보험상품의 특성 및 가입자격

가. 보험상품의 특성

- 1)이 보험은 보험업법 제91조에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를 통한 계약에 한정합니다.
- 2)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1년 또는 1년이하의 단기이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3)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은 해외치료비와 국내치료비(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료비를 보상)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4)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실손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5)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 6) 실손의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보험료의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 7) 1 계약당 최저보험료는 2,000원입니다.

나. 가입자격 제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여행목적, 여행지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입제외 대상

해외장기체류자(해외유학·연수생, 교환교수, 상사주재원, 공무 등으로서 3개월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자 및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인수하지 않습니다.

※ 해외여행 실손의료비중 국내치료비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

표준형(자기부담금 20%형)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와 선택형Ⅱ(자기부담금 급여 10%, 비급여 20%형)의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는 교차 판매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담보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금액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보상한도)	
기본형	상해	해외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국내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고 5천만원 한도로 가입금액
		국내 통원	외래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합산 3십만원 한도로 각각 가입금액
			처방조제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질병	해외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국내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고 5천만원 한도로 가입금액
		국내 통원	외래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합산 3십만원 한도로 각각 가입금액
			처방조제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특약	상해, 질병	국내 치료 비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50만원 한도로 50회까지
			비급여 주사료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연간 250만원 한도로 50회까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나. 담보별 보상하는 내용

담보종목		상품종류	보상하는 내용(보장 범위)		
			기본_표준형 (자기부담금 20%형)	기본_선택형Ⅱ (자기부담금 급여 10%, 비급여 20%형)	
기본형	상해	해외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단, 척추지압술(추나요법 등) 또는 침술(부항, 뜸 포함)의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을 한도로 보상)		
			국내입원	실제치료비의 80%해당액	실제치료비중 급여 90%해당액과 비급여 80%해당액
		국내통원		외래	실제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처방조제비	실제치료비에서 8천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실제치료비에서 8천원과 실제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질병	해외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단, 척추지압술(추나요법 등) 또는 침술(부항, 뜸 포함)의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을 한도로 보상)		
			국내입원	실제치료비의 80%해당액	실제치료비중 급여 90%해당액과 비급여 80%해당액
		국내통원		외래	실제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처방조제비	실제치료비에서 8천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실제치료비에서 8천원과 실제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특약	상해·질병 국내치료비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1회당 2만원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비급여 주사료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1회당 2만원과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주) 1. 해외치료시 :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

2. 국내치료시 :

- ①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통원의 경우 병의원 등에 따른 공제후)의 40% 한도
- ②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입원은 180일까지, 통원은 180일 이내에 외래는 90회, 처방조제는 90건을 한도로 보상
- ③ 기본형에서는 특약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및 비급여 MRI/MRA는 보상하지 않음

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다수 계약시 비례보상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례보상됨으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①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아래 2항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해외치료비, 국내입원의료비, 국내통원의료비(외래), 국내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text{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

2)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상해의료비의 경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상해의료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임신, 출산 관련 사항과 건강검진, 예방접종, 자동차보험(공제포함)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치료비의 경우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국내치료비의 경우 치과 및 한방 비급여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붙임4> 및 <붙임5>의 국내 의료기관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질병의료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보장개시시기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하며, 보장의 시기 및 종기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

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 선박 등의 교통수단이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종기까지 여행의 최종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24시간을 한도로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 ④ 위 3항의 경우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가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지배를 받았을 경우 또는 공권력에 의해 구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상적인 여행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또는 회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연장됩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나. 예정위험률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을 예정위험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낮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다. 예정사업비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한 것을 말한다.

라. 보험료 산출 예시

- 보험기간 5일, 40세 남자

담보명		가입금액(보상한도액)		
		기본_국내치료_표준형 + 특약	기본_국내치료_선택형Ⅱ + 특약	
기본	상해의료비	해외치료비	2,000만원	2,000만원
		국내치료_입원	500만원	500만원
		국내치료_통원외래	10만원	10만원
		국내치료_통원처방조제	5만원	5만원
질병의료비	해외치료비	2,000만원	2,000만원	
	국내치료_입원	500만원	500만원	

		국내치료_통원외래	10만원	10만원
		국내치료_통원처방조제	5만원	5만원
특약	상해·질병 (국내치료)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350만원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250만원
		비급여 MRI/MRA	300만원	300만원
보험료			2,310원	2,320원

※ 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의 증가, 의료수가의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매년 변동됩니다.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